

##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전 병 육\*

### ■ 목 차 ■

I. 서 론	257	IV.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 따른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276
II. 퇴직연금제도의 분석	259	1. 퇴직부담금 세액공제의 신설방안	
1. 퇴직연금제도의 개관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확대방안	
2.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의 분석		3. 퇴직부담금 손금산입의 확대방안	
III.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에 따른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272	V. 결 론	283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25. 8. 28. 1차수정일 : 2025. 10. 18. 게재확정일 : 2025. 11. 6.

### <국문초록>

퇴직연금제도는 3층의 연금구조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장성 및 연금성 등의 질적 측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들에 대해 동(同)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들 사업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이중구조 격차의 완화와 함께 중소·영세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되,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제약을 고려해서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세지원 제공방안은 먼저,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 다음으로, 2023년에 시행한 “알뜰주유소 특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방안). 마지막으로,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해 추가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퇴직부담금 손금산입 확대방안).

본 연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측면의 공헌점이 있다.

▶ 주제어 : 퇴직연금, 조세지원, 중소·영세사업주, 재정건전성, 노후소득 보장

## I. 서 론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의 도입 이후 3종의 연금구조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장성 및 연금성 등의 질적 측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들에 대해 동(同)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IRP”) 추가불입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포함한 불입·수령 단계의 조세지원과 같은 가입자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들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확대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 사업주 정책지원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편에 따른 제약이 큰 국민연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퇴직연금제도의 강화이고, 공적연금의 위기를 퇴직연금 등의 다층적 연금체계의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시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된 대안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강화는 인구구조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행상 타당성은 중소·영세사업장들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2024. 9. 4.자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형평성 제고” 및 “노후소득 강화”의 3대 분야에 대한 16개 추

진과제를 제시했는데, 이들 중 “노후소득 강화”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추진과제는 “연금수령 유도”와 함께 “단계적 의무화”이다. 구체적으로, 영세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의무화 시점 및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 등은 노사·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하도록 했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중퇴기금 재정지원 기한을 2025년 8월에서 2027년 8월로 연장해서 가입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기서 영세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업자들의 중요한 경제적 어려움인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지원을 제공해서 자발적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제약을 고려해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중에서 단계적 의무화의 일정에 맞춰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방식의 사업주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하는 구체적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안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퇴직연금제도의 분석

### 1. 퇴직연금제도의 개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동(同)적립금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동(同)제도는 제도유형별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이하 “DB형”)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retirement pension]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된다. 여기서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이다.<sup>1)</sup>

퇴직연금의 적립 및 운용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표 1>과 같이 2024년 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2023년말의 382.4조원에 비해 49.3조원 증가하였다(증가율은 12.9%). 또한, 2024년말의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형, DC형 및 IRP가 각각 214.6조원, 118.4조원 및 98.7조원이고 (상대적 비중은 각각 49.7%, 27.4% 및 22.9%), 2023년말과 비교한 증가액은 각각 4.5조원, 16.8조원 및 30.6조원으로(증가율은 각각 4.5%, 16.8% 및 30.6%) 나타났다.<sup>2)</sup>

1) 이번 문단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설명을 인용하였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검색일 : 2025. 8. 24.)].

2) 이번 문단 이후의 이번 절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퇴직연금 400조원 돌파, 총 적립금 431.7조원”, 2025. 6. 9.자 보

&lt;표 1&gt;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증가율

(단위 : 조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적립금(연도말)	255.5	295.6	335.9	382.4	431.7
증가율	15.5%	15.7%	13.6%	13.8%	12.9%

다음으로, <표 2>와 같이 2024년말의 상품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이 각각 356.5조원 및 75.2조원인데(상대적 비중은 각각 82.6% 및 17.4%),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DC형 및 IRP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2&gt; 상품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2024년말)

(단위 : 조원)

구분	DB형		DC형		IRP		계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원리금보장형*	200.0	93.2%	90.8	76.7%	65.6	66.5%	356.5	82.6%
실적배당형	14.6	6.8%	27.6	23.3%	33.1	33.5%	75.2	17.4%
전체	214.6	100%	118.4	100%	98.7	100%	431.7	100%

\* 대기성자금 포함.

다음으로, <표 3>과 같이 2024년의 퇴직연금 연간수익율은 4.77%로 2023년의 5.26%에 비해 0.49%p 감소했는데, 제도유형별로는 IRP(5.86%), DC형(5.18%) 및 DB형(4.04%)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품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9.96%) 및 원리금보장형(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의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율은 2024년을 기준으로 각각 2.86% 및 2.31%인데, 금융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자료에 포함된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lt;표 3&gt; 제도유형별 및 상품유형별 퇴직연금 연간수익율\*(2023년·2024년)

구분		DB형	DC형	IRP	계
원리금 보장형	2024년	3.81%	3.51%	3.45%	3.67%
	2023년	4.26%	3.87%	3.75%	4.08%
	증감	△0.45%P	△0.36%P	△0.30%P	△0.41%P
실적 배당형	2024년	7.10%	10.66%	10.64%	9.96%
	2023년	9.54%	14.44%	13.93%	13.27%
	증감	△2.44%P	△3.78%P	△3.29%P	△3.31%P
전체	2024년	4.04%	5.18%	5.86%	4.77%
	2023년	4.50%	5.79%	6.59%	5.26%
	증감	△0.46%P	△0.61%P	△0.73%P	△0.49%P

\* 수수료 차감 후의 적립금을 기준평균해서 계산함.

다음으로, <표 4>와 같이 2024년에 퇴직연금의 수령이 시작된 전체 계좌 중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비율은 13.0%로 2023년의 10.4%에 비해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57.0%로 2023년의 49.7%에 비해 증가했고,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별 평균 수령액도 1.47억원으로 2023년의 1.40억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lt;표 4&gt; 수급형태별 퇴직연금 수령 현황(2023년·2024년)

(단위 : 촉, 억원)

구분	연금		일시금		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2024년	계좌수(①)	74,367	13.0%	499,069	87.0%	573,436	100%
	금액(②)	109,277	57.0%	82,544	43.0%	191,821	100%
	계좌당 금액(② ÷ ①)	1.47		0.17		0.33	
2023년	계좌수	55,124	10.4%	474,540	89.6%	529,664	100%
	금액	77,040	49.7%	78,063	50.3%	155,103	100%
	계좌당 금액	1.40		0.16		0.29	

## 2.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의 분석

### 가. 퇴직연금 가입자·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 및 예산지원

#### (1)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입·수령 단계의 조세지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표 5>와 같다.

<표 5>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불인정	전액 소득공제
급여 수령시	연금 수령	과세제외	연금소득으로 과세
	일시금 수령	과세제외	퇴직소득으로 과세

다음으로,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된 과세대상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연금수령) 그 연금을 의미하는데, 연금계좌에서 인출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세법상 취급은 <표 6>과 같고, 여기서 “연금수령” 요건은 <표 7>과 같다.

즉, 연금계좌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연금수령) 인출액을 상대적으로 과세상 유리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연금외수령) 그 원천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인출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납입액·운용수익의 인출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표 6> 연금계좌에서 인출금을 수령할 때의 소득세법상 취급

연금계좌 평가액	인출시 과세방법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	소득세 과세제외

연금계좌 평가액		인출시 과세방법		
과세대상 금액	<p>⑧ 이연퇴직소득</p> <p>⑨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분, 연금계 좌의 운용수익 및 그 밖에 연금 계좌에 이체·입금되어 과세이 연된 소득(이하 “기타 납입액· 운용수익”)</p>			
구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⑧	연금소득	퇴직소득		
⑨	연금소득	기타소득		

&lt;표 7&gt; 연금수령의\* 요건

-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은 ① · ②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의료목적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갖추어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이고(이하 “부득이 인출분”),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연금소득의 과세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연금소득의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는 <표 8>과 같다.

즉, 공적연금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적연금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인출액은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세액의 60% · 70%를 원천징수하고, 기타 납입액 · 운용수익의 인출액은 3% · 4% ·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lt;표 8&gt;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구분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	매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표 9>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lt;표 9&gt;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구분	원천징수세율	
⑧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가정시 원천징수세율 × ⑧
	연금 실제 수령연차	⑧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⑨ 기타 납입액 ·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 연금 소득	연금소득자의 나이별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5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⑩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
		5%
		4%
		3%
		4%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표 10>의 사적연금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된다.

&lt;표 10&gt; 분리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구분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분리과세	⑧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가정시 원천징수세율 × 70% · 60%
	⑨ 기타 납입액 · 운용수익을 부득이 인출분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연금소득자의 나이별 세율 (5% · 4% · 3%)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신연금은 4%

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표 11>과 같이 기타 납입액 · 운용수익(<표 6>의 ⑨)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이하 “연금계좌

연금외수령분")이 포함된다. 이와 구분해서 기타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 소득(이하 "연금계좌 연금수령분")은 부득이 인출분과 함께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연금계좌 연금외수령분의 과세방법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15%)이다.

<표 11> 기타 납입액·운용수익의 인출액의 소득구분

과세대상금액	인출내용	소득구분
	연금외수령한 소득(연금계좌 연금외수령분)	기타소득
◎ 기타 납입액 · 운용수익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인출요건 을 갖추어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부득이 인출분)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소득(연금계좌 연금수령분)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의 인출액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과 구분한 분류과세인 퇴직소득인데,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단, 퇴직일시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입금·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이 인출될 때 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과세이연). 즉,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이연퇴직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액을 인출시 원천징수납부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한다.

연금소득의 과세체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입 단계의 조세지원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표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다.

&lt;표 12&gt;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세액공제 = 해당 납입액\*<sup>A</sup> × 12% · 15%\*<sup>B</sup>

\*<sup>A</sup> MIN(MIN(ⓐ, 600만원) + ⓑ, 900만원)

\*<sup>B</sup>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수령 단계의 조세지원으로 사적연금소득에 <표 10>의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 <표 13>과 같이 계산한다. 즉, <표 13>의 세액계산 특례는 “개인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①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할 경우의 세액과 ② 15%(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경우의 세액 중 낮은 금액을 세부담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lt;표 13&gt;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64조의4)

사적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MIN(① · ②)

① 종합과세시 종합소득결정세액<sup>3)</sup>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그 밖의 공제 · 감면세액

② 분리과세시 종합소득결정세액<sup>4)</sup> = 사적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 × 15% + 그 외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3) 사적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그 연금소득금액은 기본세율(6% – 45%)을 적용받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과 같은 세부담 수준이다.
- 4) 사적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사적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연금소득이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인 경우를 가정하여 15% 세율로

## (2) 퇴직연금 사업주의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통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도 마찬가지이다. 즉,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 연금의 부담금(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하고,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의 10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퇴직부담금을 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에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입 및 수령 단계의 조세지원에 비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용 발생액인 퇴직부담금에 대한 원칙적인 손금산입 외의 별도의 조세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들의 현실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중퇴기금 가입 사업주·가입자에 대한 예산지원

중퇴기금 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

분리과세될 때의 세부담 수준을 상한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2. 4. 14.자로 중퇴기금 제도를 도입했고, 동(同)제도의 확산을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2022년 9월부터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수준으로 하는 사업주 재정지원(이하 “기본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퇴기금 제도의 시행 초기에 가입사업장과 가입자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서 동(同)제도의 확산이 정체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소퇴직기금 제도에 가입하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주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확대된 사업주·가입자 재정지원(이하 “현행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후에 정부는 현행 재정지원을 더욱 보완해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가입기한을 2027년 8월까지 연장하였다.

#### 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해외 사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입자에 대한 불입·수령 단계의 조세지원 및 예산지원으로 구성된다. 즉, 이를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손금산입의 세무상 취급 외의 별도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의 중퇴기금 가입 사업주·가입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구분해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예산지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영국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불입 단계에서 소득공제(net pay arrangement)와 보험료 매칭(relief at source)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별도의 불입한도가 없는 근로자 기여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40,000 파운드이고, 소득공제에는 1,073,100 파운드의 생애기간 한도액도 적

용하는데, 연간 및 생애기간 한도액은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점증하는 구조이다.<sup>5)</sup>

또한, 보험료 매칭은 소득공제를 통한 저소득층의 낮은 절세효과를 고려해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자가 기여금을 불입하면 정부는 동(同)불입액의 25%를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는데, 보험료 매칭을 포함한 전체 불입액에는 개인별 소득의 한도가 적용된다.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은 대부분 보험료 매칭을 적용하고, 개인연금에는 반드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 단계에서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보험료 매칭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세액 환급을 적용한다. 즉, 소득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절세효과가 작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의 신고유형별로 구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가 불입한 기여금의 10%~50%를 환급한다(세액환급).<sup>6)</sup>

다음으로, 독일에서 리스트연금의 부담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통한 감면액(소득공제액 × 가입자의 한계세율)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배제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리스트연금은 소득공제와 보조금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면서 고소득층에게는 소득공제의 조세지원을 제

5) 이번 문단과 다음 문단의 내용은 Age UK, “Pensions advice”, <https://www.ageuk.org.uk/information-advice/money-legal/pensions/>(검색일 : 2025. 8. 24.) ; Money Helper, “Tax and pension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x-and-pensions>(검색일 : 2025. 8. 24.) ;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Pensions and tax”, <https://www.litrg.org.uk/pensions/pensions-and-tax>(검색일 : 2025. 8. 24.) 및 영국 정부, “Tax when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검색일 : 2025. 8. 24.)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 이번 문단의 내용은 미국 국세청, “Topic no. 410, Pensions and annuities”, <https://www.irs.gov/taxtopics/tc410>(검색일 : 2025. 8. 24.) 및 Forbes Retirement Advisor, “Prepare For Your Ideal Retirement”, <https://www.forbes.com/advisor/retirement/>(검색일 : 2025. 8. 24.)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의 예산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다.<sup>7)</sup>

구체적으로, 리스트연금의 기본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154 유로이고, 자녀 보조금은 1인당 185 유로이며(2008년 이후 출생자는 300 유로), 리스트연금의 부담금은 MAX{MIN(전년도 총소득의 4%, 2,100 유로), 60 유로}인데, 가입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또한, 리스트연금의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져서 저소득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이고, 가입자의 배우자는 본인 부담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 리스트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호주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 단계에서 세전 기여금에 대한 저율과세와<sup>8)</sup> 함께 매칭지원금을 적용한다. 즉,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 불입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불입 단계에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매칭지원금(Government co-contribution)을 지급한다.<sup>9)</sup>

- 
- 7) 이번 문단과 다음 문단의 내용은 독일 노동사회부,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Fakten-zur-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etzliche-rentenversicherung.html>(검색일 : 2025. 8. 24.) ; 독일 연방 법률, “Bundesrecht - tagaktuell konsolidiert - alle Fassungen seit 2006”, <https://www.buzer.de/gesetz>(검색일 : 2025. 8. 24.) 및 독일 연금보험, “Rente”,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rente\\_node.html](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rente_node.html)(검색일 : 2025. 8. 24.)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8)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퇴직연금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불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기여금에 대해 저율과세하는 것이다.
- 9) 이번 문단과 다음 문단의 내용은 호주 국세청, “Super co-contribution”,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super-for-individuals-and-families/super/growing-and-keeping-track-of-your-super/how-to-save-more-in-your-super/government-super-contributions/super-co-contribution>(검색일 : 2025. 8. 24.) ; 호주 사회복지부, “Income support payments”, <https://www.dss.gov.au/income-support-payments>(검색일 : 2025. 8. 24.) ;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 “Age Pension and government benefits”, <https://moneysmart.gov.au/retirement-income-sources/age-pension-and-government-benefits>(검색일 : 2025. 8. 24.) 및 호주 연금 기금협회, “Retirement Standard”, <https://www.superannuation.asn.au/consumers/retirement-standard>

구체적으로, 2024~2025년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60,400 달러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할 경우 본인 기여금의 최대 50%(한도액은 500 달러)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하는데, 저소득 근로자의 적극적 기여를 유인하기 위해 동(同)지원금은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본인 기여금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주요 국가들은 중퇴기금에 한정된 우리나라에 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sup>10)</sup>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standard/(검색일 : 2025. 8. 24.)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0) 노후소득의 원천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30.0%로 비교대상인 G5 국가들의 평균(55.5%)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사적연금 및 자본소득 등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도 21.4%로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기능이 취약해서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근로소득(48.6%)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소득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도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는 35.8%로 G5 국가들의 평균(61.4%)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 원천의 국가별 비교(가처분소득 대비 구성비율, 2020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공적이전소득 <sup>A</sup>	30.0%	39.3%	50.1%	68.0%	41.9%	78.1%
사적이전소득 등 기타 <sup>B</sup>	21.4%	28.8%	9.6%	13.9%	43.9%	15.0%
근로소득 <sup>C</sup>	48.6%	31.9%	40.3%	18.1%	14.2%	6.9%

\*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3.

\*<sup>A</sup>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특수직연금 등

\*<sup>B</sup>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 외 저축에 대한 수익 등 자본소득, 퇴직금 및 사망일시금 등

\*<sup>C</sup>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의 국가별 비교(2020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소득대체율 <sup>A</sup>	35.8%	50.5%	38.8%	55.3%	54.4%	71.9%

\*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3.

\*<sup>A</sup>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세후순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

그러나, 예산지원과 별도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사업주의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손금 산입의 세무상 취급 외의 별도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다음 장과 같이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주가 법인세의 조세혜택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 III.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앞선 장에서 확인한 퇴직연금의 확대를 위한 중소·영세사업주에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율 및 가입율이 부진하고, 근로자의 상당한 추가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DC형의 상대적 비중이 큰데,<sup>11)</sup> 이것은 이들 사업장의 낮은 성장성·수익성과 함께 취약한 재무 건전성과 부족한 여유재원으로 인해 퇴직부담금의 사외적립을 위한 사업주

11) 통계청(2024)의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서 확인한 연도별·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 도입율 및 가입율과 2023년의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가입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 도입율 및 가입율(2016~2023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도입율	30인 미만	23.4%	23.8%	24.0%	24.3%	24.0%	24.0%	23.7%	23.2%
	30인 이상	75.3%	76.2%	77.7%	78.3%	78.7%	78.9%	79.0%	79.5%
	합계	26.9%	27.2%	27.3%	27.5%	27.2%	27.1%	26.8%	26.4%
가입율	30인 미만	30.4%	31.4%	32.2%	33.0%	33.2%	33.6%	33.5%	33.1%
	30인 이상	60.8%	61.9%	63.9%	63.8%	65.3%	66.8%	66.9%	66.7%
	합계	49.3%	50.2%	51.3%	51.5%	52.4%	53.3%	53.2%	53.0%

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지는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종사자규모별 사업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매출액과 종사자규모 간의 일반적 비례 관계를 고려하면 <표 14>와 같이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취약해서 퇴직연금의 적극적 도입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현황을 고려해서 소속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의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인 경우에 임의적 용도의 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서(즉, 누적된 손실로 인해 사업의 원본이 오히려 감소해서) 자체적인 재무적 여력으로는 퇴직연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소속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조기 도입에 대한 사업주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가입근로자 비율(2023년)>

구분		DB형	DC형	IRP특례	병행
도입 사업장	30인 미만	18.7%	70.6%	6.9%	3.7%
	30인 이상	25.7%	49.0%	0.4%	24.9%
	합계	19.9%	67.0%	5.8%	7.3%
가입 근로자	30인 미만	19.6%	76.6%	3.2%	0.6%
	30인 이상	52.1%	45.4%	0.0%	2.5%
	합계	43.5%	53.7%	0.9%	2.0%

<표 14> 연도별 및 매출액 규모별 일반법인 경영실적·재무상태(2018~2022년 평균)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개수	경영실적				재무상태			
		평균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율	순이익율	총자산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익 잉여금
5억원 이하	427,773	122	-1.5%	-32.4%	-29.0%	1,250	77.0%	120.8%	-147
5~20억원	191,393	1,085	-0.2%	2.3%	2.4%	1,638	59.2%	151.8%	275
20~50억원	100,344	3,170	0.0%	3.8%	3.4%	3,514	56.7%	165.6%	782
50억원 초과	89,005	43,974	0.8%	6.0%	4.5%	58,472	51.0%	142.0%	16,377
합계	808,516	5,555	-1.2%	5.2%	3.9%	7,922	53.9%	141.3%	1,887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여기서 후술하는 정책지원의 구체적 설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영세사업주가 일반적 조세혜택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즉, 대부분의 조세지원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감면으로 제공되는데, 매출액과 종사자규모 간의 일반적 비례 관계를 고려하면 <표 15>와 같이 중소·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최종적 세금부담(결정세액)이 매우 작고,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감소액(공제감면세액)도 낮은 산출세액으로 인해 더욱 작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확대의 유인으로 일반적 세액공제·감면을 채택할 경우에는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15>와 같이 중소·영세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 세무조정을 반영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양(+)의 값이더라도 세액공제·감면의 절세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설계에서는 이들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순손실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과세대상 소득이 없거나) 가장 낮은 10% 세율의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의 구간)인 경우에는 역시 최종적 세금부담(결정세액) 및 감소액(공제감면세액)이 매우 작아서 대부분 이들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감면의 효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의 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현실적 제약과 무관하게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lt;표 15&gt; 연도별 및 매출액·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2018~2022년 평균)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개수	매출액	순이익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감면 세액	결정 세액
매출액	5억원 이하	459,989	112	-70	18	3	0.2	3
	5~20억원	196,617	1,079	26	77	10	2	9
	20~50억원	102,639	3,166	108	192	29	7	22
	50억원 초과	91,643	52,314	2,543	3,493	768	106	662
	합계	850,888	6,326	255	427	90	13	77
과세 표준	0원	394,715	2,286	-183	0.0	0.3	0.0	0.3
	2억원 이하	65,274	1,605	57	56	6	1	5
	2억원 초과	98,368	37,387	2,671	3,321	719	101	618
	합계	850,888	6,326	255	427	90	13	77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IV.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이번 장에서 분석하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가급적 법인세의 현행 과세체계 및 조세지원 항목을 퇴직연금 확대의 정책적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하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지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반영하였다.

### 1. 퇴직부담금 세액공제의 신설방안

먼저, 퇴직연금 확대의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고용지원” 분야의 대표적 조세지출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할 수 있지만, 도입목적이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인 동(同)세액공제 대신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출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와 같은 정책적 취지를 조세법령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0조의4]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선방안(이하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상당액의 50% 또는 100%(청년·경력단절여성)를 세액공제하는 것인데,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 유사한 방식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8년말의 일몰기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인 퇴직부담금에 대해 법인세의 일반적인 10%의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sup>12)</sup>

추가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영세사업주의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세금부담의 감소액이 매우 작아서 효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최저한 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동(同)신설방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법개정 방안은 <표 16>과 같다.

<표 16> 중소·영세사업주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

현행	개정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퇴직보험료등 세액공제)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2) <표 16>의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은 2025. 9. 2.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589)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동(同)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특법 제29조의9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하는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단, 동(同)개정법률안은 이번 절의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과 비교해서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의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제한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공제율(10%→20%) 및 기간(3년→4년)을 더욱 확대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퇴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대상 퇴직보험료등의 계산, 세액공제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확대방안

중소기업인 중소·영세사업주에 대한 퇴직연금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장 보편적 조세지출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동(同)세액감면은 2023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280개의 항목 중에서 10번째의 큰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는 조세지출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자발적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근로복지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적 취지를 반영해서 동(同)세액감면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표 17>의 감

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sup>13), 14)</sup>

<표 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구분		일반적 감면업종	도매업등(도소매업·의료업)
소기업	수도권	20%	10%
	수도권 외	30%	10%
중기업	수도권	0%	0%
	수도권 외	15%	5%

<표 17>의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2023년에 시행한 “알뜰주유소 특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비율을 인상하는 개선방안(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2023년 개정세법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업종의 감면율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20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sup>15)</sup> 전환시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10%p 인상하였다. 따라서, 앞선 절과 같이 2028년말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알뜰주유소 특례와 동일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10%p 인상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한다(동항 제3호).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1명당 500만원)(≥0)
-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14) 단, 성실중소기업은 <표 17>에 따른 감면비율에 1.1을 곱한 감면비율 적용한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조특법 제7조 제3항 제1호).

추가적으로, 앞선 절과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방안을 통한 신규 도입 영세사업주에 대한 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동(同)확대방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법개정 방안은 <표 18>과 같다.<sup>16)</sup>

<표 18> 중소·영세사업주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방안)

현행	개정안
<p>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팔호 생략)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p> <p>1.~3. (생략)</p> <p>②~③ (생략)</p> <p>&lt;신설&gt;</p>	<p>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p>

-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16) 최저한세의 적용배제와 관련한 조특법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방안은 생략하였다.

현행	개정안
	1항 제3호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 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 제2호 각 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을 감면 비율로 한다. 다만, 동항 제1호에 따른 감면 협정 중 동항 제2호에서 감면 비율을 열거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 비율로 한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3. 퇴직부담금 손금산입의 확대방안

전술한 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과 유사하게 퇴직연금 사업주의 퇴직부담금에 대해 일반적인 손비보다 더 큰 금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확대의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는 별도의 손금산입을 신설하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의 추가적 부담액에 대해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는 세액공제 대신 일반적인 100%보다 더 큰 비율의 손금산입을 허용해서 퇴직연금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00%를 초과하는 손금산입은 법인세의 현행 과세체계에서 명시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지만 특정 비용발생액에 대해 손금산입과 함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손금산입의 비율이 100%보다 훨씬 커지는 것과 효과가 동일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같은 법 제126조의2) 등과 같은 사례들을 현행 과세체계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해 추가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이하 “퇴직부담금 손금산입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2028년말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과 별도로 동(同)부담금의 50%인 추가적 손금산입을 조특법에 신설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추가적 손금산입을 위한 50%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연구개발비에 대해 150%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특별비용공제(special deduction)의 사례를 참고해서 정한 것이다(즉,  $150\% - 100\% = 50\%$ ). 예컨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액보다 큰 150%의 초과공제를 허용해서 실제 발생액만큼의 과세소득 축소와 함께 한계세율의 절반 수준의 공제율에 의한 세액공제를 암묵적인 조세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앞선 절과 같이 퇴직부담금 손금산입 확대방안을 통한 신규 도입 영세사업주에 대한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동(同)확대방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은 <표 19>와 같다.

<표 19> 중소·영세사업주의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퇴직부담금 손금산입 확대방안)

현행	개정안
<신설>	<p>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퇴직보험료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를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퇴직보험료등”이라 한다)과 별도로 공제대상 퇴직보험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대상 퇴직보험료등의 계산, 손금산입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V. 결 론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의 도입 이후 3종의 연금구조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장성 및 연금성 등의 질적 측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들에 대해 동(同)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들 사업주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식의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실적은 매우 부진한데, 이러한 실태의 원인은 이들 사업장의 낮은 성장성·수익성, 취약한 재무건전성 및 부족한 여유재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이 단계적의 무화의 일정에 맞춰서 퇴직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주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사업주의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손금산입의 세무상 취급 외의 별도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대다수 중소·영세사업주가 일반적인 법인세의 조세혜택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격차의 완화와 함께 중소·영세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되, 현실적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제약을 고려해서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주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제공방안은 먼저,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퇴직부담금 세액공제 신설방안).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인 퇴직부담금에 대해 법인세의 일반적인 10%의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2023년에 시행한 “알뜰주유소 특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인상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방안).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10%p 인상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영세사업주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퇴직부담금 지출액에 대해 추가적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퇴직부담금 손금산입 확대방안).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영세사업장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과 별도로 동(同)부담금의 50%인 추가적 손금산입을 조특법에 신설해서 당해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까지 적용함으로써 동(同)제도를 조기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주 지원방안의 제도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 조세지원의 개편방안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의 과정에서 정책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퇴직연금 400 조원 돌파, 총 적립금 431.7조원”(붙임 :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분석”), 2025. 6. 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국가법령정보, [law.go.kr](http://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http://txsi.hometax.go.kr).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http://scourt.go.kr).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http://www.samili.com).

### 2. 국외 문헌 및 인터넷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3.

독일 노동사회부,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Fakten-zur-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etzliche-rentenversicherung.html>.

독일 연금보험, “Rente”,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rente\\_node.html](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rente_node.html).

독일 연방 법률, “Bundesrecht - tagaktuell konsolidiert - alle Fassungen seit 2006”, <https://www.buzer.de/gesetz>.

미국 국세청, “Topic no. 410, Pensions and annuities”, <https://www.irs.gov/taxtopics/tc410>.

영국 정부, “Tax when get a pension”, <https://www.gov.uk/tax-on-pension>.

호주 국세청, “Super co-contribution”, <https://www.ato.gov.au/individuals-and-families/super-for-individuals-and-families/super/growing-and-keeping-track-of-your-super/how-to-save-more-in-your-super/government-super-contributions/super-co-contribution>.

호주 사회복지부, “Income support payments”, <https://www.dss.gov.au/income-support-payments>.

호주 연금기금협회, “Retirement Standard”, <https://www.superannuation.asn.au/consumers/retirement-standard/>.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ge Pension and government benefits”, <https://moneysmart.gov.au/retirement-income-sources/age-pension-and-government-benefits>.

Age UK, “Pensions advice”, <https://www.ageuk.org.uk/information-advice/money-legal/pensions/>.

Forbes Retirement Advisor, “Prepare For Your Ideal Retirement”, <https://www.forbes.com/advisor/retirement/>.

Low Incomes Tax Reform Group, “Pensions and tax”, <https://www.litrg.org.uk/pensions/pensions-and-tax>.

Money Helper, “Tax and pensions”, <https://www.moneyhelper.org.uk/en/pensions-and-retirement/tax-and-pensions>.

<Abstract>

## How to Provide Tax Preferenc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Promote the Retirement Pensions

Byung Wook Jun\*

Though the retirement pensions grow rapidly, their qualitative properties are deemed not to be as good as expected. Specifically,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ntroduce the stepwise compulsory retirement pensions to small business owners with 30-or-less employees in order to guarantee the pension rights and prevent overdue wages. Considering those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s and the necessity for government supports, various tax preferences should be provided to small business owners so that they may be given enough economic incentives to sign up the retirement pensions contract.

Those tax preferences should be provided selectively to small business owners who adopt the retirement pensions in early stages (“qualified small business owners” hereafter) so as to reduce the gap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reflect the government’s constraint on the financial soundness.

Detailed tax preferences for those purposes could be designed in this study as below. First, a new tax credit for the retirement pension expenses could be established for qualified small business owners. Next, the rates of the special tax exemption for small-and-mid sized firms could be raised temporarily for qualified small business owners. Finally, the retirement pension expenses could be additionally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for qualified small business owners.

This study is contributable in that it provides diverse practical implications to be used in the policy discussion to revise the retirement pensions for the old-age income security.

► **Key Words** : retirement pensions, tax preferences, small business owners, financial soundness, old-age income security

---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